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. 11. 17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서보영 의원 등 7명(장호섭, 남현주, 이선주, 황국주, 박왕규, 박종길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11. 17.)

2. 제정이유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규정 (안 제4조)
- 다.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(안 제6조)
- 마.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65조, 제94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2023. 11. 13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는 보호관찰 대상자, 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,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, 법 제65조에서는 갱생보호 방법을 제시하며, 제71조에서는 갱생보호 사업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,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함.
- 전국 27개 지부·지소 및 7개 기술교육원을 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갱생보호를 위해 생활지원, 취업지원, 가족지원, 상담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공단 대구지부는 2022년 학업지원 155명, 심리상담 741명 등 7,108명을 지원했고, 2023년 10월 현재 학업지원 141명, 심리상담 900명 등 6,971명을 지원하고 있음.
- 법무부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6.4%(성인 12.0%, 청소년 4.5%)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, 신문기사(백세시대, 2018. 10. 12)에 따르면 재범 현황은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가장 많아 보호관찰 기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소홀해져 범 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.
- 따라서 이들의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갱생보호사업이 요구되므로 법 제2조 및 제9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조례안에 명시하고,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